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 
관한조례개정조례(안)』

《檢討報告書》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  
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  
습니다.

□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4. 25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□ 개정(제안) 이유

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. 10.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 
따라 지원대상자의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 
수급자로 변경됨은 물론 급속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  
내용에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 
보호대상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-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
-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, 국가보훈자,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,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함.(안 제2조)
- 지원내용은 명절보상품, 월동대책비, 긴급구호비, 교육관련 경비,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.  
(안 제3조)

## □ 관 련 법 규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
## □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에서 대부분 조례개정 완료함.

## □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

-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. 10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기타 부적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내용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그러나 제1조 목적규정 내용중 근거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」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등」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(수정의견 별첨)

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고자 : 이 낭식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 
관한 조례 개정조례(안)』

수 정 의 견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을 위하여 규정함	제1조(목적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등을 위하여 규정함